

 <b>행정안전부</b>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작성과	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	
	<b>2017년 12월 22일(금) 조간</b> <b>(12. 21. 14:00 이후)부터</b>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담당자	행안	과 장 김중열 사무관 길영수
			국토	과 장 남영우 사무관 김부병
		연락처	행안	044-205-1340 044-205-1313
국토			044-201-3755 044-201-3765	

## 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건축물 단열재 감찰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

-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와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점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.
- 이날 발표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**6층 이상 건축물\***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시행한 **표본점검 결과**와 이에 대한 **대책**으로서
  - \*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로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강화  
(기존) 30층, 120m 이상 → (개정) 6층, 22m, 건축물 2,000㎡이상('16.4.8 시행)
- 최근 국내·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\*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**현장에 정착되어** 있는지를 점검하고, 이를 토대로 **현장밀착형 대책**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.
  - \* (국내) '15.1.10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(10층) 화재/ 사망 5, 부상 125명
  - \* (해외) '17.6.14 런던 그렌펠 타워(24층) 화재/ 사망 80여명
- 점검 결과, 건축물 마감재료를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을 갖는 단열재(준불연재 이상)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하였다.

- 또한,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·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 하는 등 건축 인·허가상의 문제를 463개소에서 확인하였다.

□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먼저, 고의적인 부실설계·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·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토록 조치하고
-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구,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·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.

□ 이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실시공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단열재 제조·유통 단계>

- 외견상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고,

\* 기재정보 : 제품명, 재질, 두께, 자재밀도, 난연성능 등급 등

- 난연성능시험성적서 DB를 구축하여 설계 및 감리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.

#### <건축 인·허가 단계>

-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.
- 지역건축안전센터\*(18.4월 설치 예정)에 건축사,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유도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.

\*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행안부-국토부 협의 중

### <단열재 시공 단계>

- 단기간(2~3주)에 이루어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·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,
- 단열재의 공급 여부, 시공 여부,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,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게 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\*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.

\* 제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난연성능 단열재를 공급, 유통,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1장의 서류로 순차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는 품질관리서

### <건축법 위반자 처벌>

-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·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,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,
- 위법한 설계·시공·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,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'18년에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금번 안전감찰 및 제도 개선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안전협업의 모범사례로,

-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악의적·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‘징벌적 손해배상제도’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또한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“런던 그린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므로,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”하다면서

- “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,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